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고시 개정안

1. 개정이유

석탄, 광석, 모래 등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적재되는 살화물의 경우 화차계중장치를 이용하여 축중을 측정하도록 하였으나, 살화물을 취급하는 역 중 화차계중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15개역이 추가로 확인되어 철도운영자가 2025년 3월까지 설치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차의 축중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신설

화차계중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살화물을 운송하는 화차의 축중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25년 3월까지 축중을 측정할 수 있는 화차계중장치를 설치토록 경과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 제39조 , 「철도차량운전규칙」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차의 축중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축중을 측정할 수 있는 화차계중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살화물 취급역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단서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